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준공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용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¹⁾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다.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에 의거 영 제13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착공 및 준공예정일 등이 포함)에 따른다.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한 자는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효력이 상실 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 관리 부적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는 ○○○○○○○○○으로부터 2015. 9. 11. 도산동 1번지 일원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개소, (주)○○○○ ○○○○ ○○○으로부터 2015. 10. 20. ○○동 000-00번지 일원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개소에 대하여 각각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지하수개발·이용 신청자인 ○○○○○○○○○과 ○○○○ ○○○은 각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신고(2015. 9. 11., 2015. 10. 20.)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2년이 경과된 2017. 9월까지도 준공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하수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미준공 시설에 대하여 신고 효력 상실 처분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적법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준공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국무총리실 ‘지하수방치공 관리대책’(’08. 9.)에 따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관내에는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 중인 12,465개소의 불법지하수 시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주광역시 ○○○○국 ○○○○과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12,465개소와 2014년 광주광역시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시·구 산업단지(95개소) 및 다량이용업체(157개소) 시설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자치구를 통하여 운영하였다.

자진신고기간에 불법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원상복구 이행 담보를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현장 확인 전까지 현금 또는 (지급) 보증서,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운영기관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증 발급 후 이행보증금이 예치되면 15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시설설치 내용 중 굴착깊이, 굴착지름, 취수계획량’, ‘양수설비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지름, 설치깊이, 양수능력’을 확인한 후 준공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불법 지하수시설 7,371개소 중 3,446개소는 원상복구 이행보증서가 첨부된 자진신고를 접수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7. 9월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3,446개소의 자진신고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준공확인증 교부 등 행정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3,925개소의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7. 9월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시정] ①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예정 기한을 초과하여 미착공 또는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효력 상실 통보 등 적의 조치하고,

② 불법 지하수개발·이용시설 7,371개소 중 자진신고한 3,446개소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준공확인증 교부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3,925개소의 불법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